



태풍·호우에 의한 재해유형

홍수·침수

유해·위험요인

-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
- 하천 인근에서 작업 중 집중호우로 빠르게 불어난 급류에 휩쓸림



예방대책

- 태풍·호우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, 위험작업 중지조치

감전

유해·위험요인

-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, 전선 등에 의한 감전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



예방대책

- 전기기계·기구의 절연 및 충전부 방호조치 실시
-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

붕괴·매몰

유해·위험요인

-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
-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



예방대책

- 사면 덮개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-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측 실시



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점검 항목

- 태풍, 집중호우 등 기상청의 '경보' 이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?
-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?
-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폭우 시 침수의 위험(배수구 점검)은 없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침수 시 전기감전의 위험은 없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침수 시 오물의 유입으로 위생상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침수대비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 등을 없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정전대비 손전등, 양초 등 비상구호 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?
- 태풍·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후에 대한 조치사항이 정해져 있는가?



고용노동부 : 044) 202-8968, 8972
안전보건공단 : 052) 703-0121~0129, 0111~0113

태풍·호우 시

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





태풍·호우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



태풍·호우 발생 전(예보단계)

공통

- ▶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북상시기 및 호우특보 발효여부 수시 확인
- ▶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(병원, 소방서, 경찰 등) 연락망 구축
- ▶ 유사 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

호우특보(주의보, 경보)

- 주의보 : 3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경우
- 경보 : 3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180mm 이상인 경우

업종별

건설업

- 현장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
-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
- 굴착사면 등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
건설업 외(제조, 서비스업)

-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·장비 확보 후 비치
-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실시

태풍·호우 발생 (주의보·경보 단계)

공통

- ▶ 저지대·상습침수지역 내 사업장은 근로자 임시 대피 실시
- ▶ 지붕 위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외부작업 중지
- ▶ 유리창, 가설구조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



업종별

건설업

- 강풍·강우 시 철골조립, 타워크레인 인상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- 굴착부, 맨홀 등 침수우려 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

건설업 외(제조, 서비스업)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, 전선 등 접촉금지
- 지하층 등 침수된 장소의 출입통제(감전, 질식위험)

태풍·호우 발생 이후 단계

공통

- ▶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·하수도, 도로 등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
- ▶ 침수된 건물, 공장 내부는 사전 환기조치 및 설비 재가동 전 안전점검 실시



업종별

건설업

- 현장 침수 후 복구·작업 재투입 시 사전 감전위험요소(분전함 등) 확인
- 주요 가설구조물(동바리, 비계, 흙막이지보공)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인

건설업 외(제조, 서비스업)

-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등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실시
- 수해복구 등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설치, 개인보호구 착용